

별첨 2

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안내문

□ 편의 제공 대상

- 202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채용공고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,
 - 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 - 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
 - ③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로서 편의 제공이 필요한 자

□ 편의 제공 신청 방법

입사지원서 작성 시 편의제공 항목에 신청사항 기재,

- ①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문 확인
 - ②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 제공 신청
 - ③(필요시) 구체적인 내용 기재
 - ④ 진단서 등 증빙서류 확인
- * [참고1] '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' 확인

▼

입사지원서 작성 시 증빙서류(사본) 등록

-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 증빙서류(사본)를 등록

▼

신청 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

결과통보(문자 등)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[참고1]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,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상이등급자의 경우,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참조한 후, [참고1]의 편의 제공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(의사진단(소견)서에 해당 장애 유형과 정도 기재).
-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S/W탑재 컴퓨터, 점자문제지, 대필 등의 편의 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, ②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 종합병원)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([참고2]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).
 - ※ 다만, 임산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.
 - ※ 해당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→[병원·약국 찾기]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.
- 편의지원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: 채용홈페이지(<https://kead.careerlink.kr/>) 또는 콜센터 (070-4012-6067)

참고1

장애인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

장애인유형 및 정도			필기시험 편의제공 내용		비고
지체 장애인	상지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
		장애인정도가 심한 자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답안지 대필	-	기준 1~3급
		장애인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준 4~6급
	하지	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기준 1~6급
뇌병변 장애인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
	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	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-	기준 1~3급
	장애인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· 답안지 대필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준 4~6급
	장애인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	
시각 장애인	공통			· 확대/축소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
	장애인정도 가 심한 장애인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7배)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준 1~2급
	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	기준 3급 2호
	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-	기준 3급 1,2호
	장애인정도 가 심하지 않 은 장애인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7배)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준 4급 2호
	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-	기준 4,5급 1호
	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준 5급 2호
		· 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% 이하로 감소한 사람			기준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 이하
		· 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 이하인 사람			기준 5급 2호, 6급
		·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	-	
청각 장애인	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 수화통역사 배치·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기준 2~6급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·일시적 신체장애		· 장애 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검토 후 안내	
	임신부		· 높낮이조절책상 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	
	과민성 대장·방광증후군		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진단서 (원본)	

* 확대문제지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
* 확대답안지(선택형시험)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

* 상이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

참고2

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

□ 발급기관: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
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
※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

※ 임신부의 경우에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로 증빙 가능(임신주수 또는 예정일 포함)

□ 발급일자: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

응시원서 접수 마감일	유효 진단서 발급일
2025년 6월 13일	2023년 6월 13일 이후

□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(아래 3가지)

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(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/및 시야각 명기)

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
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
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
예시) 시험시간 연장, 점자문제지를 신청할 경우

⇒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, 점자문제지

-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
<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>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시	* ①~③ 반드시 기재
시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- 시력/시야: 좋은 눈 0.07,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, 점자문제지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시력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	
뇌병변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증상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	
기타	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- 증상: 편안 약시와 無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(단,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)	

* 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(소견서 불인정)